
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2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6.

발 의 자 : 진선미 · 임호선 · 박성준
이학영 · 최혜영 · 윤관석
남인순 · 조오섭 · 유동수
서영교 · 김민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연합회 ·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·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공제료를 낸 조합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 ·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음.

그런데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사업의 의의와 주무관청의 감독을 통하여 적정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4항, 제45조의2 신설 및 제93조제4항).
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협동조합연합회등의”를 “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”로 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공제사업)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(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조합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)을 할 수 있다. 다만, 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.

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

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.

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93조제4항 전단 중 “제45조”를 “제45조 및 제45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~ ③ (생략) ④ <u>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「보험업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 <u><신설></u>	제1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-----</u> ----- -----. <u>제45조의2(공제사업)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(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조합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)을 할 수 있다. 다만, 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.</u> <u>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</u>

제93조(사업) ① ~ ③ (생략)

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.

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93조(사업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 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<u>제45</u> <u>조</u>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협동 조합”은 “사회적협동조합”으로 본다.	④ ----- ----- -----<u>제45조</u> <u>및 제45조의2</u>-----. ----- -----.
--	--